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항 : ① 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(장주은 → 김성현)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3. 21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1. 31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주식 책임운용역 : 장주은	주식 책임운용역 : 김성현
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운용역 변경 내역 반영	-	<u>2024.03.21 : 주식 책임운용역 변경(장주은→김성현)</u>
5. 운용전문인력	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주식 책임운용역 : 장주은	주식 책임운용역 : 김성현
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주식 책임운용역 : 장주은	주식 책임운용역 : 김성현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주식 책임운용역 <신 설>	주식 책임운용역
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장주은 : <u>2020.09.10~2024.03.20</u> 김성현 : <u>2024.03.21~현재</u>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1. 31. 기준</u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14. 이익 배분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 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3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 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5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나. 과세	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가. 회사개요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라. 운용자산 규모			